

이사회 운영규정

[제정 2009. 5. 29]

[개정 2009. 12. 23]

[개정 2012. 9. 26]

[개정 2013. 8. 30]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 정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3.8.30)

제2조(적용범위)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고, 이 규정에 정함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(개정 2013.8.30)

제2장 이사회 구성 등

제3조(구성)(개정 2013.8.30)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제4조(소집)(개정 2013.8.30) ① 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2월과 12월에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원장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.(신설 2013.8.30)

③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이사는 부의할 안건을 원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.(신설 2013.8.30)

④ 원장은 제2항에 의한 임시이사회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(신설 2013.8.30)

⑤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회의 개최 7일전(안건이 차

년도 예산안인 경우에는 15일 전)까지 회의의 목적과 주요내용을 포함한 회의 개최계획과 안건을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(신설 2013.8.30)

⑥ 제4항 및 제5항의 통지는 (별지 제2호 서식)에 따르되 전자우편으로 갈음할 수 있다.(신설 2013.8.30)

⑦ 원장이 소집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한 직무대행자가 이를 소집한다.(개정 2013.8.30)

제5조(의장) 원장은 회의시 의장이 된다. 다만, 원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 제2항을 준용한다.

제6조(간사 등) ① 이사회의 회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진흥원 소속직원 중에서 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.

제3장 회의절차

제7조(부의사항)(개정 2013.8.30) ① 이사회의 심의·의결할 사항은 정관 제16조와 같다.(개정 2013.8.30)

②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하여야 할 정관 제16조의 제1항 제10호, 제38조의 주요규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3.8.30)

1. 이사회 운영규정(개정 2013.8.30)
2. 임원추천위원회운영규정
3. 직제규정
4. 인사규정
5. 복무규정
6. 급여규정
7. 회계규정
8. 감사규정(신설 2013.8.30)
9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규정(개정 2013.8.30)

제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는 정관 제18조의 규정에 준한다.(개정 2013.8.30)

제9조(권한위임) 정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이사는 이사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대리인은 (별지 제3호 서식)에 의한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에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8.30)

제10조(부의절차) ① 이사회에 의안을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(별지 제1호 서식)에 의한다.

② 간사는 원장으로부터 이사회 소집결정을 받아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이사에게 부의(안)을 첨부하여 (별지 제2호 서식)의 이사회 소집통보서를 발송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에는 소집통보서를 발송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1조(회의준비) ① 간사는 회의에 부의될 원안을 접수·등록하고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.

② 간사는 각 의안에 부의번호를 기입하여 회의시 배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제안설명) 이사회 부의 안은 간사가 제안이유 및 내용을 설명한다. 다만, 간사 유고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주관 부서장 또는 실무자에게 설명하게 할 수 있다.

제13조(의견청취)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4조(서면결의) ① 원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(별지 제4호 서식)에 의한 서면결의로 이사의 동의를 받아 집행할 수 있다.(개정 2013.8.30)

② 서면결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운영되어야 하며, 이 경우 원장은 개최사유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제1항의 의결에 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하며, 원장은 차기 이사회에 의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④ 제2항의 통지는 (별지 제5호 서식)에 따른다.

⑤ 제2항의 통지에 대하여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면회의에 의한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를 집행할 수 없으며 원장은 즉시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(개정 2013.8.30)

제15조(소위원회) ① 이사회는 제7조에 따른 사항과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의 사전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이사회 의결로 지명된 이사로서 구성하며,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가 지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③ 소위원회의 의결은 소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기타 회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이 규칙을 준용한다.

④ 소위원회는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, 그 사본을 각 이사 및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
제16조(긴급사항)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원장은 사전에 집행하고 최단시일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승인을 얻을 수 있다.

제17조(회의록의 기록 및 결과통지) ① 간사는 (별지 제6호 서식)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12.23)

②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와 이사 및 감사에게 이사회 회의결과를 통지한다. 다만, 이사 및 감사에 대한 통지는 전자우편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.(개정 2009.12.23)

제18조(회의록 등의 보관) ① 간사는 이사회 회의록 등 이사회 관련서류(이하 "관련서류"라 한다)를 보관하여야 한다.(개정 2009.12.23)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보존년한은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작성된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 및 확인을 거쳐 보존한다.(개정 2009.12.23)

제4장 보 칙

제19조(비상임이사 등 지원) ① 비상임이사,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그 업무수행을 위한 자료수집, 분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선임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0조(보칙)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(개정 2013.8.30)

부 칙(2009. 5. 29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09. 12. 23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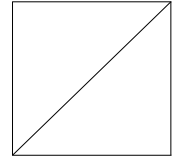
부 칙(2012. 9. 26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3. 8. 30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 (개정 2012.9.26)



의안번호	제 호
접수일자	년 월 일

의결안건

(안)

제 회 정기이사회 안건

제 출 자	이사 ○ ○ ○ (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)
제 출 일 자	년 월 일

(안)

1. 의결주문

2. 제안사유

3. 주요골자

4. 관련근거

5. 기타사항

이사회운영규정

(별지 제2호 서식)

이사회 소집통보서

수신 : 이사 제위

2009. .

제 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일 시 :

나. 장 소 :

다. 부의안건 :

라. 참고사항 :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명에 의하여

이사회 간사 ○ ○ ○ ○ (인)

(별지 제3호 서식) (개정 2013.8.30)

위 임 장

본인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사회 운영규정 제9조에 의하여
다음의 대리인이 귀 진흥원의 제○○회 정기(임시)이사회에 대리
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함

대 리 인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년 월 일

위 임 자

소 속 :

직 위 :

성 명 :

(인)
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 귀하

(별지 제4호 서식) (개정 2009.12.23, 2013.8.30)

이사회 서면결의서
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관 제18조(이사회의 의결),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(서면결의)에 의한 제OO회 (정기, 임시)이사회 상정안건에 대하여 본인의 의사를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.

안건 명 :

구 분	가	부	서 명
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			
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○○○이사			
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			

위 기록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함

년 월 일

재 적	
가	
부	

간사	감사

(별표 제5호 서식) (개정 2013.8.30)

서면 이사회 통지서

수신 : 이사 제위

20

다음 안건을 () 사유로 서면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의결하고자 이사회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통지합니다.

의 안 번 호	제 목
제 호	
제 호	
제 호	
제 호	
제 호	

- 붙임 1. 제 회 이사회 부의안 1부.
- 2. 이사회 서면결의서 1부.

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명에 의하여

이사회 간사 ○○○○(인)

이사회운영규정

(별지 제6호 서식) (개정 2009.12.23, 2013.8.30)

년 월 일

제 회 이사회 회의록

한국산업기술진흥원

년도 제 회(정기, 임시)이사회 회의록

1. 회의개요

① 회의일시 :

② 회의장소 :

③ 출석임원

- 이사회 의장 : ○○○ (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)
- ○ 이사 : ○○○ (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)
○○○ (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
※ 재적이사 ○명중 ○명 참석

- 감사 : 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
④ 불참인원 : ○○○ (소속 및 직책)

⑤ 상정안건(총건)

가. 보고안건(건)

○ 제0호 ○○○

...

○ 제0호 △△△

나. 의결안건 : 건

○ 제0호 ○○○

...

○ 제0호 △△△

⑥ 소관부서 :

2. 논의 결과(요지)

□ 보고안건 제0호 : ○○○

① 안건주요내용

○

-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○

③ 논의결론

○

...

□ 의결안건 제0호 : ○○○

① 안건주요내용

○

-

② 참석자 발언 요지

○

③ 논의결론

○

3. 제 ○○회 (정기, 임시)이사회 참석자 서명록

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○○○○년 ○월 ○일 개최된 ○○회 ○○이사회에 참석한 이사회 의장과 참석이사 및 감사는 부의안건 (보고안건 ○건, 의결안건 ○건, 기타 안건 ○건)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기명날인함.

20 년 월 일

의 장	원 장	(서명)
	이 사	(서명)
	이 사	(서명)
	이 사	(서명)
	이 사	(서명)
	이 사	(서명)
	이 사	(서명)
	이 사	(서명)
	이 사	(서명)

4. 회의내용